컴퓨터등사용사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 통신망침해등)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



벌등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5. 2013고단4451,2013고단4888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최혁(기소), 정문식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은율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.

압수된 증 제1 내지 141호(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360호)를 피고인 1로부터, 압수된 증 제1 내지 251호 (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67호)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(1-2) 기재 각 기프트콘 판매와 관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